관 변 경(案)

현 행	변 경 (안)	비고
제2조(목적)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~ 29. (생략) 30.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	제2조(목적)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무적으로 한다. 1.~ 29. (좌동) 30.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 31.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32.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 33.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34.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	사업목적 추가
제7조의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① ~ ⑧ (생략)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.	제7조의2(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① ~ ⑧ (좌동) ⑨ (삭제)	상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
제9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① ~ ⑦ (생략)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⑨ (생략)	제9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① ~ ⑦ (좌동) ⑧ (삭제) ⑧ (좌동)	상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
제9조의3(신주의 배당기산일)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	제9조의3(동등배당)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)된 동종 주식 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 게 배당한다.	
제10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~ ③ (생략)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	제10조(명의개서대리인) ① ~ ③ (좌동)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	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업무 폐지

현 행	변 경 (안)	비고
제11조 (삭제)	제11조(주주명부 작성·비치) ①이 회사는 전 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②이 회사는 5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	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
제12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한다. ③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한다.	제12조(기준일) (삭제)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한다.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사회의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.	상법 개정내용 반영
제13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~ ⑤ (생략)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 급에 관하여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3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~ ⑤ (생략)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	상법 개정내용 반영
제14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~ ⑤ (생략) ⑥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4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~ ⑤ (생략) ⑥ (삭제)	상법 개정으로 인한 삭제

현 행	변 경 (안)	비고
제14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 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 록한다. (단서 신설)	제14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 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<u>사채권</u> 및 신 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. <u>다만</u> ,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 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.	전자등록이 의무화 되 지 않은 사채에 대하 여 제외 근거 신설
제29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(생략)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.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수는 합산한다. ③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.	제29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(좌동) 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<u>다만</u> , 상법 제 368조의4의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 임을 결의할 수 있다. ③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 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 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④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 제는 적용하지 않는다.	개정 상법 제409조 반영
	부칙 (2021. 3. 25) 이 정관은 제5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 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	